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 상충되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

2.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안 제4조)
- 나.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위해 해당 조항 삭제(안 제17조)
- 다. 사용료 반환 규정 개선(안 제20조)
 - 주민들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를 위해 반환을 명시
- 라.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안 제21조)
 - 분쟁을 없애기 위해 사용료 감면을 명시
- 마.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를 위한 해당 조항 삭제(안 제23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구미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읍.면복지회관”을 “읍·면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 중 “〃〇〇읍.면”을 “〃〇〇읍·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을 “읍·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관기관 대표”를 “유관기관 대표”로 하며,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간사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진행상황을 만드시”를 “진행상황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사용, 수용하기”를 “사용·수용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을 “읍·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두되, 관장은 읍.면장”을 “두며, 관장은 읍·면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5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읍·면장의”로, “이를”을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용허가취소)”를 “(사용허가 취소)”로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에 해당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로, “반환하게 ”를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제20조제2호 중 “또는 제한하였을 때”를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3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사용료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

부한 금액의 30%를 공제한 사용료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사용료의 50%를 공제 후 반환

제21조의 제목 “(사용료감면)”을 “(사용료 감면)”으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각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할 때”를 “사용할 때 : 사용료 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할 때 : 사용료 75%”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 사용료 50%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연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26조 중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재무회계규칙’”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구미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u> <u>례</u>	<u>구미시 읍 · 면복지회관 설치 및</u> <u>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 <u>회관</u>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읍 · 면복지회관</u> -----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시장이 " <u>00읍.면 복지회</u> <u>관</u> " 이라는 사업명으로 건립한 것에 한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u>00읍 · 면</u> ----- ----- -----.
제4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 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 원장 <u>각1인을 포함하여 20인이</u> <u>내로</u> 한다. ③위원장은 <u>읍.면장</u> 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4조(구성) ①----- ----- <u>읍 · 면</u> ----- -----. ②----- <u>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u> -- -----. ③----- <u>읍 · 면장</u> ----- ----- ----- -----.

④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제7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생략)

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유관기관 대표-----

-----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임무) -----
각 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각 호에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
----- 간사 1명-----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

---. ----- 진행상황을

-----.

제11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
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
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생 략)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
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
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회계) ①·② (생
략)

③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요
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①-----
- 각 호의 -----.

1. ~ 7. (현행과 같음)

8. ----- 사용 .
수용하기-----

②----- 읍 . 면 -----

--.

제12조(관장) ①-----
두며, 관장은 읍 . 면장-----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리계획) -----
----- 읍 . 면장-----

-----.

제15조(예산회계) ①·② (현행
과 같음)

<삭 제>

④----- 읍 . 면장의 -----

----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

제17조(사용허가취소) ①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 취소, 제한, 정
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
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
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
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
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 각 호에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사용료 반환)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 반환 --
-----.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
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2. -----
-----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
당하는 사용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
일 3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
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
를 공제한 사용료

<u><신 설></u>	4. <u>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u> <u>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u> <u>경우 : 납부한 금액의 30%를</u> <u>공제한 사용료</u>
<u><신 설></u>	5. <u>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u> <u>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u> <u>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u> <u>당하는 사용료와 총사용료의</u> <u>50%를 공제 후 반환</u>
제21조(사용료감면) <u>다음각호에</u> <u>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u> <u>수 있다.</u>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u> <u>용할 때</u> 2. <u>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u> <u>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u> 3. <u>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감면</u> <u>결정을 하였을 때</u>	제21조(사용료 감면) <u>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u>----- -----. 1. ----- <u>사</u> <u>용할 때 : 사용료 전액</u> 2. ----- ----- <u>인정할 때 : 사용료 7</u> <u>5%</u> 3. <u>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감</u> <u>면 결정을 하였을 때 : 사용료</u> <u>50%</u>
제23조(손해배상) ① (생 략) <u>②제1의 손해배상은 운영위원</u> <u>회에서 결정한다.</u> ③ (생 략)	제23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 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위탁)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신 설> 제25조(지도감독) ①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위탁) ①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읍·면장----- ----- - 연 2회 -----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용) ----- -----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재무회계규칙」-----.
--	--

관계법령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
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
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
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새마을과
입 안 자	과 장	김 영 준
	담 당	이 용 우
	담 당 자	장 진 욱 (480-6818)